

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1. 이용계약

- ① 이용계약은 수급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보호자(자녀)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.
- ② 이용계약은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하고,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기초로 체결한다.
- ③ 계약서에는 계약기간, 장기요양급여의 종류, 장기요양 급여비용, 개인정보 보호, 손해배상책임 등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.
- ④ 계약서 양식은 별도 규정에 의한다.

2. 계약기간

-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. 별도의 희망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.
- ② 장기요양인정서에 등록되어 있는 기간 내에서 구체적인 기간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며, 계약기간의 변경도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.
- ③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을 경우 수급자(보호자)는 이용계약서에 서명하여야 하며, 기타 필요한 서류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.
- ④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기간은 자동 연장으로 본다.
- ⑤ 계약내용 변경사항(장기요양인정등급, 장기요양급여비용, 비급여 비용 등)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.

3.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

권리

-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
- ②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를 열람할 권리
-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
- ④ 수급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

의무

-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
-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

-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
- ④ 건강 상태 이상 시 즉시 통보 의무
- ⑤ 장기요양급여 변경 시 안내할 의무와 이용수칙 준수 의무
- ⑥ 노인 학대 징후 발견 시 조사 및 상담의 의무
- ⑦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
- ⑧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입·퇴소 절차,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

4.계약의 해제

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-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
-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
- ③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급여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
- ④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

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

- ⑤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등 지불하여야 할 비용을 자주 지연시킴으로써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기관과 수급자(보호자)간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기관이 인정할 경우
- ⑥ 기관 규칙이나 기관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지장을 줄 때
- ⑦ 기타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기관과 수급자(보호자)간에 협의로 계약을 해지한다.